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87
----------	-----

2023. 9. 19.(화)  
교 육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김현문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3년 8월 29일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30일

라. 상정일자: 2023년 9월 7일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현문 의원)

### 가. 제안이유

○ 기초학력진단검사 도구, 대상, 실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일부를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정책과 학교 교육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교육적 실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 진단검사를 기초학력진단검사로 변경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교사가 기초학력진단검사 도구를 학생의 인지·비인지 영역에 맞춤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대상과 평가 방식 등은 매년 수립하는 기초학력보장 시행계획에 따르도록 함(안 제10조)

##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 가. 조례 개정이유

- 교육부는 기초학력이 개인의 존엄을 지키고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전제조건이며 근래에는 인권으로서의 의미로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음<sup>2)</sup>.
- 충청북도교육청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증진을 핵심적인 교육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기초학력 진단 검사 평가 대상 및 필수 과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 정책’을 중장기계획수립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sup>3)</sup>

2)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기본계획(2023~2027): 첨부자료 1

3) 충청북도교육청 2023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첨부자료 2

-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강화된 충청북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 및 세부사업 추진에 부합하는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기초학력진단 검사 실시 등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초 학력 보장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 법체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기초학력진단검사)**에 ‘교사의 판단에 의해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구를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또는 학급 단위로 시행할 수 있고, 학년·학교·지역·도 단위의 평가 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던 규정을 ‘교사가 학생의 인지·비인지 영역에 맞춰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구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대상과 평가 방식 등은 매년 수립 하는 기초학력보장 시행계획에 따르도록’ 수정하여 충청북도 교육청의 중복형 기초학력 보장 정책 및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초학력보장 시행계획수립 시 학교 교육현장의 실정과 교육적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확대된 기초학력진단 대상과 내용, 실시 방법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나 학업 경쟁, 학교 서열화 등과 같은 교육적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사전대처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됨.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기초학력검사 실시 등에 관한 조항을 수정 보완하여 충청북도 내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적 특성을 고려한 충청북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고 있어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법률체계 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바,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첨부자료 1】

#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2023 ~ 2027)

## 추진 배경

### □ 개인의 삶과 사회발전을 위한 기초학력 중요성 부각

- 기초학력은 개인이 존엄을 지키며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 전제 조건, 근래에는 인권으로서의 의미 부각
  - ※ **대통령 취임사** “자유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공정한 교육 접근 기회 보장이 중요”
-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간 격차 해소, 지원 사각 지대 해소 등 **국가 및 시도교육청 등의 책무성 확보 필요**

## 추진 목표 및 추진 방안

### 정책 비전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

### 추진 목표

- 2025년까지 **SI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
- 2027년까지 국가-지역-학교 연계 **기초학력 안전망 완성**

핵심과제		세부과제	
<b>진단</b>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 선정	<b>1-1</b> 현장 수요 기반 진단도구 개선	<b>1-2</b> 기초학력 맞춤형 진단체계 강화
		<b>1-3</b>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체계화	
<b>지원</b>	 기초학력 향상 다중 안전망 구축	<b>2-1</b> 정규수업 연계 기초학력 교수·학습 혁신	<b>2-2</b> 학교 내 종합적 지원
		<b>2-3</b> 학교 밖 전문적 지원	
<b>예방</b>	 코로나19 대응 교육결손 해소 집중지원	<b>3-1</b> 학습·심리·정서 측면의 종합적 접근	<b>3-2</b> 학생별 상황·특성 및 지역연계 맞춤형 지원
<b>기반</b>	 학습지원교육 기반 내실화	<b>4-1</b> 교과·담임 교사 지원	<b>4-2</b> 기초학력 보장 업무 여건 정비
		<b>4-3</b> 교원양성과정 개선	<b>4-4</b> 국가·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자료제공: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첨부자료 2】

## 2023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내실화 및 책무성 강화

○ 평가 대상 및 필수과목의 단계적 확대

현행			개선		
학년	필/선	과목	학년	필/선	과목 및 적용 시기
초 3~6		3Rs(읽기, 쓰기, 셈하기)	초 1	기초한글('23. 9월), 연산('23. 9월)	
			초 2	3Rs('23. 3월)	
			초 3~6	3Rs(읽기, 쓰기, 셈하기)	
초 3~6	필수	국어, 수학	초 3~6	필수	국어, 수학, 영어('23), 사회('24), 과학('24)
	선택	사회, 과학, 영어			
중 1~고 1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중 1~중 3	필수	국어, 수학, 영어, 과학('23), 사회('24)
	선택	과학, 사회(역사)	고 1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선택	과학, 사회(역사)
활용 가능성	· 기초기본 학력진단보정 · PC, 시험지 병행		활용 가능성	· 기초기본 학력진단보정, · 일부 다차원 진단 · 스마트패드, PC, 시험지 병행	

○ 시기별, 대상별 명확한 책무성 강화

시기	내용	학교급 및 대상학년	과목	대상
3월	기초학력진단의 달	초등학교 2~6학년	3Rs	전체학생
		초등학교 3~고 1학년	교과	전체학생
6월	기초학력 1차평가의 달 (1차 향상도 평가와 연계)	초등학교 2~6학년	3Rs	3월 진단에서 미도달학생
		초등학교 3~고 1학년	교과	3월 진단에서 미도달학생 및 향상도 검사 희망자
9월	기초학력 2차평가의 달 (2차 향상도 평가와 연계)	초등학교 1학년	한글, 수학	전체학생
		초등학교 2~6학년	3Rs	3, 6월 진단에서 미도달학생
		초등학교 3~고 1학년	교과	3, 6월 진단에서 미도달학생 및 향상도 검사 희망자
12월 2~3주	기초학력 3차평가의 달 (3차 향상도 평가와 연계)	초등학교 1학년	한글, 수학	전체학생(권장)
		초등학교 2~6학년	3Rs	
		초등학교 3~고 1학년	교과	

## □ 충북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구축 활용

### 충북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이란?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다차원으로 학생들을 진단하고, 학생별 진단결과에 따른 AI 기반 맞춤형 피드백과 학습이력 관리를 지원하며, 독서·인문, 진로, 인공지능교육 등 학생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 충북형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 □ 플랫폼 개념도 및 연차별 구축 계획



1차 플랫폼 구축·운영 (2022~2023년)	2차 플랫폼 구축·운영 (2024~2025년)	플랫폼 연계·통합 (20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기본학력 및 학습 유형/저해 요인 등 진단 지원</li> <li>•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기록·분석하여 교수자/학습자에게 맞춤형 학습처방 서비스 제공</li> <li>• 학습이력 관리 서비스 지원</li> <li>• 충북교육청 산하 플랫폼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방법 혁신</li> <li>• 독서, 인문, 진로, 인공지능 등 학생 성장 맞춤형 교육 지원</li> <li>• 원스톱 비인지적 요소진단을 통한 상담, 치료 서비스 연계</li> <li>• 고등학교 진로·진학 통합이력 관리시스템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랫폼 내 콘텐츠 및 기능 고도화</li> <li>• 지속적인 양질의 에듀테크 콘텐츠 연계 방안 모색</li> <li>• 충북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과 국가수준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연계 운영 추진</li> <li>• 데이터 공유 체계 마련</li> </ul>
↑	↑	↑
<b>지능형 학습 분석 지원</b>	<b>맞춤형 학생성장 지원 확대</b>	<b>국가 단위 플랫폼과 연계</b>
<b>‘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시기별 맞춤형 학생 성장 지원</b>		

(자료제공: 충청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과 제2항을 제1호와 제2호로 하여,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학력”, “학습지원대상학생”, “학습지원교육”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2. “교육환경”이란 학습지원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매년”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진단검사”를 “기초학력진단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단검사의”를 “기초학력진단검사의”로, “진단검사 도구를 자율적으로”를 “기초학력진단검사 도구를 학생의 인지·비인지 영역에 맞춤 지원할 수 있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대상, 평가 방식 등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 계획에 따른다.

제14조제2항 중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을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초학력”, “학습지원대상학생”, “학습지원교육”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p> <p>② “교육환경”이란 학습지원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을 말한다.</p>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0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매년 필요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진단검사의 도구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며, 교사는 진단검사 도구를 자율적으로 활용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기초학력”, “학습지원대상학생”, “학습지원교육”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p> <p>2. “교육환경”이란 학습지원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을 말한다.</p>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  <u>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교육청</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          -----          ----- <u>기초학력진단검사</u> -----          -----.</p> <p>② -----  <u>기초학력진단검사의</u> -----          -----  <u>기초학력진단검사 도구를 학생의 인지·비인지 영역에 맞춤 지원할 수 있도록</u> ---.</p>

③ 진단검사는 교사의 판단에 의해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또는 학급 단위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학년·학교·지역·도 단위의 평가 방식은 지양한다.

④ (생략)

제14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생략)

② 센터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과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대상, 평가 방식 등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 관계 법령

##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8호, 2021. 9. 24.,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2.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3. “학습지원교육”이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4호, 2022. 3. 25., 제정]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진단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검사 과목·방법 및 일정 등을 알려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평가문항 및 그 결과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